

산란계 농장 대상 방역기준 유형부여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
「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」 고시(이하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고시) 일부개정안(2023.10.23.)

|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란?

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(인센티브)을 부여하는 제도로 농가 주도의 자율방역 수준을 제고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예방에 기여

| 주요 개정내용

- ① **평가항목 보완** →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, 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강화 등
- ② **실질적 참여혜택 및 처리절차 개선** → 점검횟수 차등, 연속 2년 이상 우수농가 유효기간 연장 등
- ③ **평가방식 다양화** → 대규모 농장(10만수 이상)은 농장 여건에 맞는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으로 평가 가능

소독·방역시설 및 방역수칙 강화 등 평가항목 보완(별표1, 방역기준평가표 개정)

- ⊕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중복항목 통합 등을 통해 법정 의무사항을 강화하되 평가항목수 줄여 업무편의성 제고
 - *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('23.4.18. 공포 → '23.10.19. 시행)
 - ** (기존) 136항목(법정 70 + 추가 66) → (변경) 130(76 + 추가 5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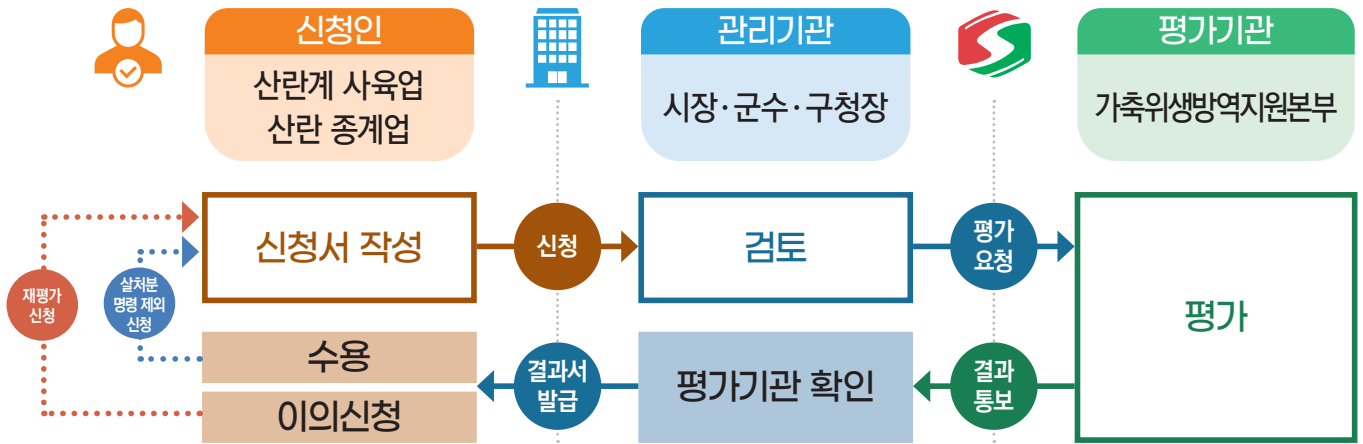
실질적 혜택부여 및 처리절차 개선(제5조, 제6조, 제9조 및 별지 1~4호)

- ⊕ 신청·변경·갱신 등 처리절차 구체적 명시, 알운반차량 관리* 및 연속 2년이상 우수농장인 경우 유효기간 연장 등 혜택부여 및 민원편의성 제공
 - * 신청·변경·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신설 등으로 행정편의 및 절차 간소화
 - ** 우수농장(가,나) 결과서 유효기간 연장 및 점검 등 방역조치 차등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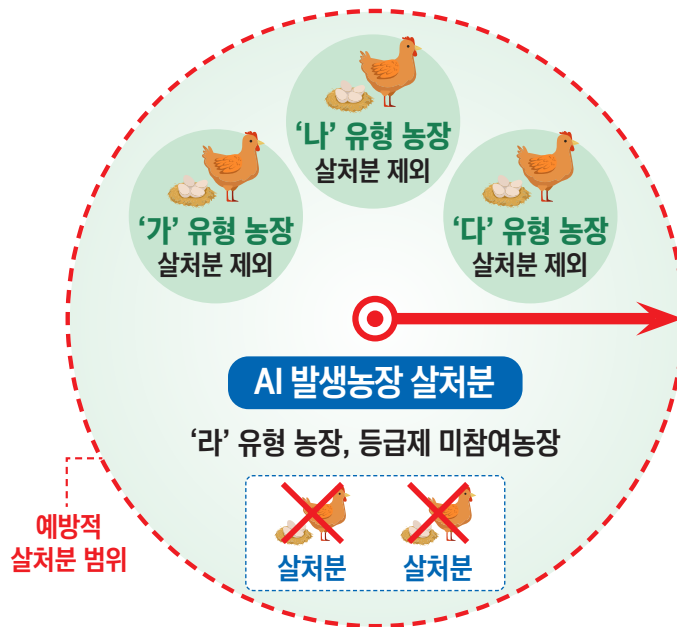
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방식 다양화(별표2 신설)

- ⊕ 대규모 산란계(10만수 이상) 농장의 자체 차단방역 프로그램*을 내실화하고 농장 구조 및 지형 상 충족이 어려운 경우 농장 상황에 따라 운용 중인 자율차단방역 프로그램으로 평가에 참여기회 부여
 - * 대형산란계 농장(30만수 이상)에 사전컨설팅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
- ⊕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에 추가*하고, 추가평가항목에 동일 수준의 자율 차단방역 관리가 가능한 경우 평가를 통해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
 - *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(별표 2) 신설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근거마련





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



유형	현행	추가(현행 + 추가)
가	500m~3km 살처분 제외 + 농장 소유·전용 계란 운반 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 예외	+ 해당 농장 소유(승용, 승합)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 면제 + 특별방역기간 내 현장점검 제외 + 연속 2년 동일등급 유지 시 1회 연장
	*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하 발생한 경우	좌동
나	1km~3km 살처분 제외 + 농장 소유·전용 알 운반 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 예외	+ 특별방역기간 내 현장점검 완화(격월 1회 내외) + 연속 2년 동일 등급 이상 유지 시 1회 연장
	* 고병원성 SI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발생	+ 추가평가사항 중 자율 관리항목으로 동일 수준관리가 가능한 경우
다	1km~3km 살처분 제외	+ 특별방역기간 내(월 1회 내외) 점검
	* 평가 기준에는 부합하나 1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	+ 추가평가사항 중 자율 관리항목으로 동일 수준관리가 가능한 경우
라	혜택 없음 * 평가 기준에 미부합	혜택 없음 * 평가 기준에 미부합